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10292

제안연월일: 2025. 4.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क्षेत्री स्री ची
판빈			(제출자)	(제출일)	심사경과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92	오세희의원	2024.11.19.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06522	오세희의원	2024.12.16.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3		2208421	오세희의원	2025.2.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원회 직접 회부(2025. 4. 10.)

- 가.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4. 17.)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데 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고포상금심의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 나.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 조제7항 신설).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9항 신설).
-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6조제10항).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 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1항 신설).
-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신설).
- 아.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0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자.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1조제2항).
- 차. 상인연합회가 안 제66조제1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 중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를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 도·감독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 3. 포상금액
-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제2항 중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④ (생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	⑤ <u>연</u>
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u>수행할 때</u> 필요한 비용을 예산	<u>사업 수행에</u>
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u> <신 설></u>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u>둘 수 있다.</u>
<u> <신 설></u>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
	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
	거나 지원할 수 있다.
<u>⑥</u> (생 략)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
<u><신 설></u>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
	<u>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u>
<u>⑦</u>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필요</u>	<u>⑩</u> <u>연합</u>
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8·9 (생략)

<신 설>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 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 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① · ③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 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 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 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 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 <u>부</u>
-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운 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2	
<u>제26</u> 조의2, 제2	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	42

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2조(벌칙) (생략)

<신 설>

	—)		
	꾸다	 	
	공단		
_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